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 총평

지방직 7급 시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직 7급 시험제도의 개편이후 첫 시험이니 만큼 낯선 시험제도하에서 시험준비를 하느라 마음고생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다들 동요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견뎌내며 차분하게 준비했던 수험생에게는 합격에 다시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실하고 묵묵하게 견뎌온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보상이 주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이번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시험문제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져 체감난이도는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었겠지만, 답이되는 선지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문항별 난이도는 평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론도 7급의 다섯과목중 하나의 과목임에도 단순히 행정학의 한 단원수준만의 학습으로 고득점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런 인식만 갖지않고 겸손하게 지방자치론을 기본서&기출문제와 법령을 중심으로 반복하면 빠른시간내에 무난하게 고득점을 받을수 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론 점수는 95점 이상이면 훌륭하고, 90점 이상이면 합격선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항별 해설은 아래에 문서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일정이 이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쉽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온 여러분에게 합격의 여부를 떠나 “수고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출제영역분석

지방자치의 기초적 이해	3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3
지방자치의 기본적 체계	5	지방자치의 재정	2
지방자치의 운영	5	정부 간 관계	2

3.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17	기출변형 문제	2	신유형 문제	1
-------	----	---------	---	--------	---

4.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짝찾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2	—	2	2	—	2	12

01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사무의 감사권
- ② 선결처분권
- ③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권
- ④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의 의결권

【해설】 ①, ③ [O]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X] 선결처분권은 지방의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된다.

동법 제10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④ [O] 동법 제39조 제1항 각호

동법 제10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summary | 지방의회의 권한 VS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① 조례 제정 및 개폐 ② 예산의 의결 및 결산 승인 ③ 중요정책의 심의·결정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의 부과·징수·감면 등 ④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항의 의결 ⑤ 행정감사권(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요구,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 ⑥ 청원수리·처리권 ⑦ 기관선회 및 자율운영권	① 자치단체의 대표 및 사무총괄권 ② 사무의 관리집행권 ③ 소속행정청 관할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 ⑤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 및 지휘감독권 ⑥ 지방의회에의 발안권 ⑦ 규칙제정권 ⑧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권(재의요구 및 제소) ⑨ 선결처분 ⑩ 임시회 소집요구권(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 소집권은 지방의회 사무국에서 함)

□ 주의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 중 하나인 '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과 '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은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에 폐지되어 현재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음.

【참고】 2021 신용한 지방자치론 p.100~107

▶ ④

0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무배분 원칙으로 옳은 것은?

- ① 경합의 원칙
- ② 중복배분의 원칙
- ③ 종합성의 원칙
- ④ 민간참여 최소화 원칙

【해설】 ③ [O]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무배분 원칙에는 종합성의 원칙, 중복배분금지의 원칙, 불경합의 원칙, 민간참여 확대의 원칙 등이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사무배분의 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의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불경합의 원칙
- ② 중복배분금지의 원칙
- ④ 민간참여 확대의 원칙

【참고】 2022 신용한 지방자치론 p.80~81

▶ ③

03 라이트(Wright)의 정부간 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포권위모형(Inclusive Authority Model)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동시에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관계를 맺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고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된다.
- ② 분리권위모형(Separated Authority Model)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독자적인 사무영역과 처리권능을 지니고 있으며, 상호협력을 할 필요도, 상호의존을 할 이유도 없다.
- ③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모두 제한된 권한을 가짐으로써, 한 정부가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 ④ 분리권위모형(Separated Authority Model)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대등한 관계를,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포함 관계를 유지한다.

- 【해설】 ① [×] 내포권위형(포괄권위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직적인 관계로 계층적 권위하에 포괄적·종속적 관계를 지니는 형태이다.
- ②, ④ [○] 분리권위형(동등권위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형이다. 주정부의 자치권은 고유의 권리로써 중앙정부의 의지에 의해 함부로 축소되거나 침해될 수 없으며, 기능적으로도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상호 독립적이다. 독자적인 사무영역과 처리권능을 지니고 있으며, 상호협력을 할 필요도, 상호의존을 할 이유도 없다.
- ③ [○] 중첩권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독자성을 유지하며 기능적으로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정부가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은 그리 많지 않고 자연히 공적 기능과 권한은 분산되어 있으며, 많은 부분에 있어 세 정부가 동시에 관여하는 일이 벌어진다.

【참고】 2021 신용한 지방자치론 p.218~220

▶ ①

04 자치제도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구 500만 이상의 시·도는 부시장이나 부지사의 수를 최대 4명 이하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 ②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교육자치, 자치경찰, 자치재정, 감사위원회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 ③ 자치구는 도시계획, 지역경제, 상수도 등에서 시·군과 권한을 달리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 ④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를 두고 있다.

【해설】 ① [×] 인구 800만(500만 ×)이상의 시·도는 부시장이나 부지사의 수를 최대 3명(4명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명으로 한다.

② [O]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교육자치, 자치경찰, 자치재정, 감사위원회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③ [O]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자치구 사무의 특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

1.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2.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
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
4. 청소·오물에 관한 사무
5. 지방토목·주택건설 등에 관한 사무
6.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7. 도로의 개설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8.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무
9.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무
10. 공원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11. 지방궐도사업에 관한 사무
12.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13.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
14. 통신신호기, 안전표시 등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④ [O]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의 설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금지, 특별자치시장 소속의 감사위원회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 올바른 지문

① 인구 800만 이상의 시·도는 부시장이나 부지사의 수를 최대 3명 이하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A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환경부 소관의 폐기물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경부장관은 A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A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A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 ④ A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①, ② [O]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O]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동법 제17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④ [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X)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동법 제17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④ A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해안지역의 해수면 매립을 완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 ② 관내 해안지역을 매립한 것이므로 매립지는 당연히 A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되지만 몇 가지 행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 ③ A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매립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면, 매립된 지역은 A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다.

【해설】 ① [O]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 ② [X] 면허관청, 소관청,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동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X]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30일 X)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⑧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X]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고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다.

동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참고】 2021 신용한 지방자치론 부속법령집 p.7, 8

▶ ①

07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자치계층은 2계층제를 기조로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단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② 우리나라에서 자치계층을 포함한 행정계층은 2~4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③ 광역시의 경우는 '광역시 - 자치구·군'의 자치 2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④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모든 시·도가 지속적으로 자치 2계층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 【해설】 ① [○]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유형은 광역과 기초로 구분되는 2계층의 중층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② [○] 우리나라에서 자치계층을 포함한 행정계층은 2~4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③ [○]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는 군과 자치구를 둘 수 있다.
- ④ [×]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서울특별시와 부산·대구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지역은 단층제, 그리고 도 지역은 2층의 중층제를 이루는 형태가 유지되기도 하였다.

【참고】 2021 신용한 지방자치론 p.52~57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 변동되었을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하여야 한다.

【해설】 ① [O]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O] 지방재정법 제42조 제2항

동법 제42조 【계속비 등】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O] 지방재정법 제3조 제2항

동법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X] 예산을 이체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동법 제47조의2 【예산의 이용·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올바른 지문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참고】 2021 신용한 지방자치론 p.168, 172~174

▶ ④

09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 ㄴ.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 ㄷ.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 ㄹ.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허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해설】 ㄱ, ㄴ [X]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는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

ㄷ, ㄹ [O]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허가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

▶ 올바른 지문

- 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 ㄴ.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참고】 2021 신용한 지방자치론 p.77, 78

▶ ④

10 지방의회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91년 이후 전국 광역지방의회 의원정수의 총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② 기초지방자치의원선거구의 획정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인구규모를 반영한다.
- ③ 2006년 기초지방의회 선거 때부터 정당공천이 허용됨과 동시에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다.
- ④ 기초지방자치의회의 지역구별 의원정수는 총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조례가 아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다.

- 【해설】 ① [X] 1991년 이후 전국 광역지방의회 의원정수의 총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고 지방선거별로 증감에 변화가 있다.
- ②, ④ [X]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며, 기초지방자치의회의 지역구별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26조 【지방자치의원선거구의 획정】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 올바른 지문

-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한다.
- ④ 기초지방자치의회의 지역구별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summary | 1995년 이후 지방선거제도의 변천

선거	유형		
	광역의회	기초의회	광역·기초단체장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정당공천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급제	유급제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구 지방자치의원선거에서의 여성할당제		

【참고】 2021 신용한 지방자치론 p.137~142

▶ ③

11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②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설】 ① [O]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위한 조례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O]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동법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O]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동법 제80조【자격상실의결】 ① 제79조제1항의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X]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법 제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올바른 지문

④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지방자치법」상 자치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④ 두 지방자치단체를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해설】 ① [X]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 ②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동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은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 ③ [O]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동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④ [O]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서 시행되던 조례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동법 제25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①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 2022 신용한 지방자치론 p.69

▶ ①

13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기도 안성시 주민인 최모씨가 오늘 아침에 구입한 담배에 부과된 담배소비세는 경기도에 납부될 것이다.
- ② 사업자등록을 하고 승마투표권을 판매한 강원도 강릉시 주민 이모씨에게 부과된 레저세는 강릉시에 납부될 것이다.
- ③ 충청남도 태안군 주민인 강모씨가 오늘 취득한 양식업권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충청남도에 납부될 것이다.
- ④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인 오모씨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는 충청북도에 납부될 것이다.

- 【해설】
- ① [X] 담배소비세는 시·군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안성시에 납부될** 것이다.
 - ② [X] 레저세는 광역자치단체에 부과되는 도세로 **강원도에 납부될** 것이다.
 - ③ [O] 등록면허세는 도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충청남도에 납부될** 것이다.
 - ④ [X] 자동차세는 시·군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천시에 납부될** 것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경기도 안성시 주민인 최모씨가 오늘 아침에 구입한 담배에 부과된 담배소비세는 안성시에 납부될 것이다.
- ② 사업자등록을 하고 승마투표권을 판매한 강원도 강릉시 주민 이모씨에게 부과된 레저세는 강원도에 납부될 것이다.
- ④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인 오모씨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는 제천시에 납부될 것이다.

summary | 우리나라의 지방세 세목체계

	구분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도세	시·군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 광역시의 군(郡)지역(대구시 달성군,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등)은 도세를 광역시세로 함.

☐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서울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 재산세는 자치구의 세목, but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개선을 위해 특별시세(50%)와 자치구세(50%)로 공동과세 ⇨ 특별시분 재산세는 전액 시(市)조례에 따라 관할구역에 교부

14 지방공무원 제도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용권자는,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람을 직권면직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류를 신설할 수 없다.
- ③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임용권자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① [O]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면직사유가 된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② [X]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③ [O] 시·도에 임용권자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지방공무원법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한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O]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다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면평가의 결과(총점 및 분야별 평가 점수에 한정한다)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1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외국인의 투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ㄴ.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ㄷ.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위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ㄹ.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ㄱ [X]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투표권이 인정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 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ㄴ [O]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 성으로 확정된다.

동법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 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 (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 으로 확정된다.

ㄷ [X]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시·군·자치구별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3분의 1 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과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의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3분의 1 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지사 : 해당 시·군·자치구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ㄹ [O]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동법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 올바른 지문

- ㄱ.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외국인도 투표권이 인정될 수 있다.
 ㄷ.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위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청 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참고】 2021 신용한 지방자치론 p.160

▶ ③

16

주민투표 및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 ②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의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주민투표와 주민감사청구 가능 연령은 2020년에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다.
- ④ 공무원은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그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해설】 ① [O] 주민투표법 제9조 제3항

주민투표법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③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② [O]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③ [X] 주민투표와 주민감사청구 가능 연령은 19세 이상이다.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 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O] 주민투표법 제21조

주민투표법 제21조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2.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

▶ 올바른 지문

③ 주민투표와 주민감사청구 가능 연령은 19세이다.

【참고】 2021 신용한 지방자치론 p.152~156

▶ ③

17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와 군 자치제가 규정되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의해 불신임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 ③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기관통합형을 취하였다.
- ④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는 구성되지 않았지만 주민직선의 단체장은 선출되었다.

- 【해설】 ① [X] 시와 군 자치제가 규정된 것은 1956년 제2차 지방자치법이다. 1956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직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시·읍·면장)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 ② [O] 제정 지방자치법(1949년 7월 4일 공포)에서 단체장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부여되었다가 지방자치법 2차 개정(1956년 2월)때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임권이 삭제되었다.
- ③ [X] 196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장·도지사, 시·읍·면장과 지방의원 모두를 주민에 의한 직접 선출로 규정하여, 모든 지방정부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기관대립형을 취하였다.
- ④ [X]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법의 효력이 정지당함으로써 지방자치는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참고】 2021 신용한 지방자치론 p.30~31

▶ ②

18 중앙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자치사무에 관한 시·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① [X]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O]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69조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③ [O] 지방재정법 제11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O] 지방재정법 제60조의6 제2항

지방재정법 제60조의6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념 |

19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만을 모두 고르면?

- ㄱ. A도와 B도 간의 조합 설립
- ㄴ. A도 내의 C시와 D군 간의 조합 설립
- ㄷ. E광역시 내의 F군과 G자치구 간의 조합 설립
- ㄹ. A도 C시와 E광역시 G자치구 간의 조합 설립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해설】 ② [O]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때, 시·도(ㄱ)나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ㄷ)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 2021 신용한 지방자치론 p.250

▶ ②

2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해당 시·도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해설】 ①, ② [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③ [X]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해당 시·도 교육감 1명,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동법 제20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 ④ [O] 동법 제7조 제2항

동법 제7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 올바른 지문

-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해당 시·도 교육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시·도지사가 임명한다.